

우리나라 제품안전관리제도와 체계 2

백종섭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품안전관리의 구조적 체계

정부는 우리나라의 제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성 조사를 담당할 기구와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새롭게 조직변모를 꾀하였다. 본 원고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상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핵심적 기능인 제품안전성 조사 관련 기능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 후 효율적인 조직설계안을 검토할 것이다.

제품안전성조사 기능의 특징

제품안전성 조사업무가 갖고 있는 특징은 크게 사전적 시장감시(proactive market surveillance)와 사후안전조사(reactive market surveillance)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전적 시장감시활동은 시장감시활동 장기계획(3년) 수립, 단기(1년)계획 수립, 개별 감시활동(프로젝트) 수립, 개별 프로젝트의 집행, 집행결과의 평가로 이어지는 주기적인 활동이며, 시장감시 활동의 평가 결과는 차기 계획의 수립과 관련 정부 정책에 반영된다. 사전적 시장감시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즉, 관련 업무 수행과 관련된 기본법 및 절차법의 숙지, 조사대상 제품이 유통되는 시장과 제품 특징 및 관련된 위해성 등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과 기술의 숙지, 소비자 및 관련집단의 특징에 대한 이해, 행정 조직의 작동과 관련된 지식의 이해, 개별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 생산자 및 유통관련자 등과 의사소통하는 대인관계역량을 지닌 전문적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사후안전조사는 제품안전과 관련된 사고 또는 소비자 고발 등으로 실시되는 조사이며, 고발에 대한 사전적 평가를 실시하고 이 평가에 따라 사고조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사건의 발생이나 소비자 고발에 의하여 시작되는 사후조사는 시급성을 갖는 경우가 많고, 사건의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높다는 점도 업무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사후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위험 식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수많은 사건 및 고발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도 갖고 있어야 한다.

제품안전기구 추진체계의 기본 조건

우리나라 제품안전기구의 설계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크게 실현가능성과 바람직함으로 나누

▶ 본 주제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용역보고서를 〈제품안전〉 월간지 편집형식에 따라 3(4)회에 걸쳐 연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고, 후자는 통합성, 안정성, 효과성, 전문성, 개방성 등의 다섯 가지 기준으로 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책국을 강화하는 방안, 제품안전협회를 신설하는 방안, 제품안전사고조사센터 신설방안을 비교하였다. 가장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은 기존 제품안전정책국의 안전조사 조직은 그대로 두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며, 전문성, 안정성, 효과성, 개방성 등의 조건은 행정체계의 물리적 개편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구 운영방식의 개선으로도 만족시킬 수 있다. 바람직한 측면에서는 단일의 제품안전기구가 중장기의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제품안전전략을 작성하는 것과 동시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제품안전조사센터 신설방안이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제품안전기구의 설계원칙과 방향

우리나라의 제품안전기구는 한국소비자원과 기능상의 중복이 나타날 수 있으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증진에 초점을 둔 반면, 제품안전기본법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제품안전기구는 산재되어 있는 개별제품의 안전정책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여 제품안전정책 일반에 대한 체계적인 총괄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의 제품안전관리체계와 일본의 제품안전기술센터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우리 실정을 토대로 조직설계의 원칙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제품안전기구로 [(가칭)제품안전사고조사센터]의 조직설계(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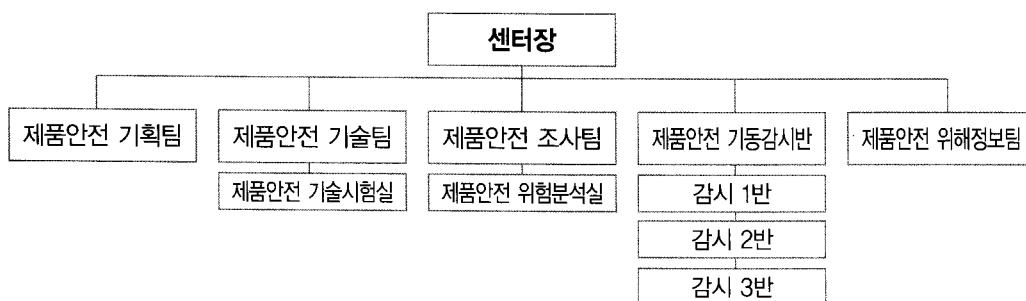
제품안전사고조사센터는 제품과 관련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검증·검사 또는 평가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제품안전사고조사센터는 행정직, 연구직, 기능직 및 계약직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90여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품안전기구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제품안전조사기구는 중장기적으로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역할과 책임의 분담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기존 제조자와 소비자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시키고, 정부의 직접규제방식을 지양하여 규제의 원리보다는 시장의 원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산업화 초기에는 제품안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미비하고 사회적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제품안전에 대한 정부의 직접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산업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제품 기술개발단계부터 품질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품안전규제관리에 있어서 제조업체와 소비자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시키고 정부의 직접규제방식에 의한 제품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시장의 원리를 중시하는 민간자율형 제품안전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중장기적 정책변화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제품사용에 따른 안전정책, 제도, 기술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제품 관련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감시기능 등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독립적인 기관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가칭)한국제품안전원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가칭)제품안전사고조사센터]의 조직설계(안)